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 봉안당에 유골반환, 합골, 타지역 이관 등으로 인해 공안치단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공고를 통하여 인천에 연고자가 있는 관외주민에게도 봉안시설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이는 직업이나 학업, 생계 등의 사유로 타지역에 부모, 자녀, 배우자를 두고 있는 인천시민에 대한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그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 타지역에 매장 또는 안치된 후 인천시로 이장하는 경우에 관외주민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일부 조문이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그 밖에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은 어문규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에 인천시에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일 경우를 포함시킴(안 제6조제1항제1호사목)
-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1호아목)
- 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던 자 중 관외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는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2)
-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30년(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함(안 제20조)
- 유골반환, 합골, 타지역 이관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공안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안치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kbboss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1

다. 관련 규정검토와 발췌사항 : 붙임2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붙임3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

제6조제1항제1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개장유골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아.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마목과 바목은 제외한다.

나. 관외 거주 사망자(개장유골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 당시 시 소재 병원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사용료를” 을 “사용료 등을” 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권자, 수탁자, 이용자 등이 장사시설과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봉안시설의 안치기간)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30년(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인천가족공원 내 가족봉안묘는 안치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공안치단 운영) ① 시장은 유골반환, 합골, 타지역 이관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공(空)안치단(이하 “공안치단”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안치단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로서 사망 당시 관내주민인 경우
2. 관외주민 중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

· 공헌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3.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던 자 중 관외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4. 관외 거주 사망자의 유골로서 그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가 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안치단 운영 방법 및 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안치
되는 봉안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치중인 봉안시설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치중인 봉안시설의 허가, 신고, 승인, 사용기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 (제8조제1항 관련)

1.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구 분				기 준	단 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 고	
화장 시설	만15세 이상			1구당		160,000원	1,000,000원		
	만15세 미만					130,000원	40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400,000원		
	죽은태아(4개월 이상)					50,000원	300,000원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					-	600,000원		
봉안 시설	봉 안 당	1인용	사용료	1기당	30년	950,000원	2,0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당	30년	1,900,000원	2,8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봉 안 담	1인용	사용료	1기당	30년	550,000원	1,6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당	30년	1,100,000원			
			관리료			300,000원			
	무연고		사용료	1기당	10년	150,000원	-		무연고실 안치
	자연 장지	수목장립 및 자연장		사용료	1기당	30년	6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정원식 수목장		사용료	1기당	30년	1,0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유택 동산	산골		사용료	1기당		10,000원	50,000원		

비고 : ①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을 포함한다)

: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②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및 제6조제1항제1

호사목의 경우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③ 죽은 태아는 부모의 주소로 제2조제11호 적용

- ④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는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 ⑤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쌍을 1기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 ⑥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자는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을 말하며 자연장지 이용 시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2. 비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기준면적	기 본 금 액			4.95㎡ 초과사용료
	계	사용료	관리료	
4.95㎡	21,400원	3,600원	17,800원	3.3㎡당(1,200원)

3.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

구 분	기준면적	관리료	비 고
계단식 일반조성묘	4.95㎡	30,000원/1년	10년 단위로 징수
가족봉안묘	8.26㎡	50,000원/1년	10년 단위로 징수

4. 인천가족공원 장사문화홍보관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시 설 명	면적[㎡]	기 준	사용료	냉·난방비	비고
장사문화 홍 보 관	영상회의실	151.2㎡	1회 (1시간)	10,000원	15,000원	

[별표 3]

사용료 등 감면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자 중 무연고자	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 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2. 화장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 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 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 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관내주민
50퍼센트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관내주민

3.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50퍼센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사용기간 연장은 감면 제외

4.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보상분묘는 제외)

가. 화장시설 : 면제

나. 봉안시설 : 30퍼센트 감면

다. 자연장지 : 50퍼센트 감면

5. 인천가족공원 안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부부합골 안치하는 경우: 1기만 징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물의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사용자의 자격 등) ① 장사 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사용자의 자격 등) ① --- ----- -----.
1.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관외주민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 망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 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 헌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다만, 신규 봉안시설 은 제외한다.</u>	바. <u>「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u>
<신 설>	사. <u>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 이 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 망자(개장유골은 제외하 다)로서 그 부모, 자녀 또 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u> 아. <u>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u>

2. (생 략)

3. 자연장지: 관내주민,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
른 배우자,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또
는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
서 개장한 유골

4. ~ 5. (생 략)

② 그 밖에 장사시설의 수급상
황을 고려하여 시장은 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
타시도 거주자 및 외국인 등에
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
은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현행과 같음)

3. 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마목과 바목은 제외한
다.

나. 관외 거주 사망자(개장유
골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 당시 시 소재 병원 또
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
주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4. ~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
구하고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사용료 등을 --
-----.
-----.

② (생략)

제14조 (원상복구 및 변상) 장사시설의 사용권자, 수탁자 및 이용자가 시설과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봉안시설 안치기간) ① 봉안시설의 최초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재사용은 10년 단위로 2회에 한해 연장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무연고 유골은 연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치기간 연장은 안치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 된 것으로 본다.

③ 부부용 안치단에 대하여는 부부 중 먼저 안치된 유골의 만기기준에 따라 연장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권자가 유골인도 신청을 하거나 중도에 사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권자, 수탁자, 이용자 등이 장사시설과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봉안시설 안치기간)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30년(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인천가족공원 내 가족봉안묘는 안치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용을 포기할 경우 부부유골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공안치단 운영) ① 시
장은 유골반환, 합골, 타지역 이
관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공(空)
안치단(이하 “공안치단”이라 한
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
구하고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
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안치단 사용을 허가할 수 있
다.

1.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
장한 유골로서 사망 당시 관
내주민인 경우
2. 관외주민 중 「국가보훈 기
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의사자
3.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던 자
중 관외지역에서 이장하는 유
골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
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4. 관외 거주 사망자의 유골로

서 그 부모·배우자 또는 자
녀가 시에 10년 이상 계속하
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안치단 운영 방법 및 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 (제8조 관련)

구분			기준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고	
화장시설	만15세 이상		1구당	160,000원	1,000,000원		
	만15세 미만			130,000원	40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400,000원		
	죽은태아(4개월이상)			50,000원	300,000원		
봉안시설	1인용	사용료	1기당	250,000원	600,000원	10년단위로정수	
				제사용료	350,000원		700,000원
				관리료	10,000원/1년		20,000원/1년
				연장기간	10년(최초) 10년2회		10년(최초) 10년2회
	부부용	사용료	1기당	500,000원	800,000원		
				제사용료	700,000원		1,000,000원
				관리료	10,000원/1년		20,000원/1년
				연장기간	10년(최초) 10년2회		10년(최초) 10년2회
	1인용	사용료	1기당	150,000원	400,000원		
				제사용료	200,000원		600,000원
				관리료	10,000원/1년		10,000원/1년
				연장기간	10년(최초) 10년2회		10년(최초) 10년2회
	부부용	사용료	1기당	300,000원			
				제사용료	400,000원		
				관리료	10,000원/1년		
				연장기간	10년(최초) 10년2회		
	무연고	사용료	1기당	150,000원	-		무연설치안치
자연장지	수목장 및 자연장	사용료	1기당	600,000원	-	30년단위로정수 (30년1회한함)	
				관리료	10,000원/1년		-
				연장기간	30년(최초) 연장없음		-
	정원식 수목장	사용료	1기당	1,000,000원	-		
				관리료	10,000원/1년		-
				연장기간	30년(최초) 연장없음		-
유택동산	산골	사용료	1기당	10,000원	50,000원		

비고 : ①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활을 포함한다):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② 관외 거주 사할된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③ 죽은 태아는 부모의 주소로 제2조제11호 적용

④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⑤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쌍을 1기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 (제8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고					
화장시설	만15세 이상	1구당	160,000원	1,000,000원						
	만15세 미만		130,000원	40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400,000원						
	죽은태아(4개월이상)		50,000원	300,000원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		-	600,000원						
봉안시설	1인용	사용료	1기당	30년	950,000원	2,000,000원	부원고설치안치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당		30년	1,900,000원	2,8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1인용	사용료	1기당	30년	550,000원	1,6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당		30년	1,100,000원	
								관리료	300,000원	
	무연고	사용료	1기당	10년	150,000원					
	자연장지	수목장 및 자연장	사용료	1기당	30년	6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정원식 수목장	사용료	1기당	30년	1,0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유택동산	산골	사용료	1기당		10,000원		50,000원		

비고 : ①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활을 포함한다):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② 관외 거주 사할된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및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경우 관내주민료 적용

③ 죽은 태아는 부모의 주소로 제2조제11호 적용

④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제20조의2제1항 제4호의 경우는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⑤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쌍을 1기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⑥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는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을 말하며 자연장지 이용시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비고 : ①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을 포함한다):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②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③ 죽은 태아는 부모의 주소로 제2조제11호 적용
 ④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⑤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쌍을 1기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비고 : ①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을 포함한다):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②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및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경우 관내주민로 적용
 ③ 죽은 태아는 부모의 주소로 제2조제11호 적용
 ④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제20조의2제1항 제4호의 경우는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⑤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쌍을 1기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⑥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는 제6조제1항제3호나무를 말하며 자연장지 이용시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1.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사 용 료 전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	관내주 민·관외주 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관내주 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2. 화장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사 용 료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관내주민
50 퍼 센트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관내주민

3.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50 퍼 센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사용기간 연장은 감면 제외

4.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보상분묘는 제외)

가. 화장시설 : 변제

나. 봉안시설 : 최초 10년 변제

다. 자연장지 : 50퍼센트 감면

5. 인천가족공원 안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부부합골 안치하는 경우: 1기만 징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물의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별표 3]

사용료 등 감면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	관내주 민·관외주 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관내주 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2. 화장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관내주민
50 퍼 센트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관내주민

3.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50 퍼 센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사용기간 연장은 감면 제외

4.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보상분묘는 제외)

가. 화장시설 : 변제

나. 봉안시설 : 최초 10년 변제

다. 자연장지 : 50퍼센트 감면

5. 인천가족공원 안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부부합골 안치하는 경우: 1기만 징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물의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 감면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바. (생략)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세입 감소) 요인

○ 별표2의 제1호 화장시설란

- 제6조제1항제3호나목 화장시설 사용료 600,000원

○ 별표2의 비고 제4항

-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는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세외수입 감소액이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4. 작성자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장 이 환 태